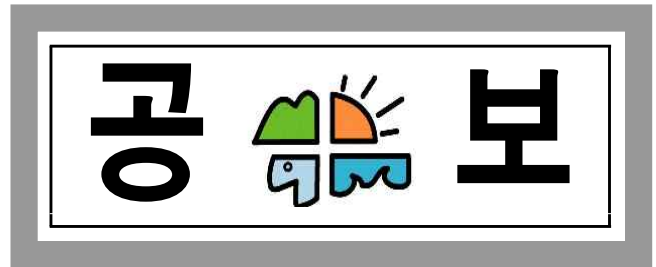


속 초 시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기 관 의 장
람	



제723호 2012년 9월 25일(화)

공 고

- 속초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2
- 속초시 주민등록업무 및 인감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2

회 란									
-----	--	--	--	--	--	--	--	--	--

발행 : 기 획 감 사 실 (전화 : 639-2223, FAX : 639-2106)

속초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속초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속초시 법무행정사무처리규칙」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9월 25일

속 초 시 장

1. 자치법규명 : 속초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

『지진재해대책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른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진재해에 대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제정 목적을 정함(안 제1조)

나. 지진발생으로 인해 우려되는 적용시설물을 정함(안 제3조)

다. 위험도 평가실시 여부 판단 및 평가단 구성·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안 제4조, 제5조)

라. 위험도 평가 및 현장조치, 평가 결과보고서 제출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
(안 제7조, 제8조)

마. 평가단원 안전 및 피해보상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안 제10조)

4. 자치법규안 : 붙임

5. 의견제출

가. 이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2년 10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속초시장(참조: 복구담당)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명) 주소 · 전화번호
- 3) 기타 참고사항 등

다. 의견제출할 곳 : 우217-030/ 속초시 중앙로 183(중앙동 469-6)

속초시청 재난산림관리과 복구담당(전화: 033-639-2760, FAX: 033-639-2588)

E-mail: tmdgywh462@korea.kr)

라. 의견제출 방법: 서면, 전화, FAX, 시 홈페이지, 직접방문 등

6. 기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속초시청 재난산림관리과 담당자 조효승(전화:033-639-2760)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속초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진에 의해 시설물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시설물의 추가 붕괴 등으로 생기는 2차 피해를 방지하고,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진재해대책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른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진피해 시설물 긴급 위험도 평가”(이하 “위험도 평가”라 한다)는 지진발생시 피해 시설물의 추가 붕괴 등으로 생기는 2차 피해를 방지하고 주민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피해 시설물의 상태를 신속히 평가하여 위험 정도를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2. “지진피해 시설물 긴급 위험도 평가단”(이하 “위험도 평가단”이라 한다)은 위험도 평가를 위해 속초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속초시 본부장”이라 한다)이 관련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을 말한다.
3. “지진피해 시설물 긴급 위험도 평가단원”(이하 “위험도 평가단원”이라 한다)은 건축·토목 등 관련분야 전문가로 속초시 및 인근 지역 거주자 중 위험도 평가단으로 등록하고 제1호의 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지진 발생으로 피해가 발생한 속초시 관할 구역내 모든 시설물에 대하여 적용된다.

② 관할구역내 시설물의 위험도 평가는 속초시 본부장이 실시한다. 다만, 전문성이 필요한 시설물의 위험도 평가는 해당 시설물 관리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험도 평가의 실시를 요청받은 시설물 관리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4조(위험도 평가 실시 여부 판단 등) ① 속초시 본부장은 다음의 경우에 위험도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1. 지진으로 시설물 피해가 발생한 경우
2. 여진 등 2차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3.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중앙본부장”이라 한다) 또는 강

원도 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강원도 본부장”이라 한다)이 위험도 평가 실시를 요구한 경우

② 속초시 지역본부장은 위험도 평가를 실시하기로 결정한 경우 피해지역 주민 등에게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③ 속초시 지역본부장은 지진에 대비하여 사전에 위험도 평가를 위한 체제를 정비하고, 위험도 평가단원 등록·관리 및 필요한 기자재 등을 비축하여야 한다.

제5조(위험도 평가단 구성·운영 및 자격) ① 속초시 본부장은 지진에 의한 시설물 피해가 발생하여 위험도 평가 실시를 결정한 경우 지체 없이 속초시 재난안전대책본부에 위험도 평가단을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② 위험도 평가단의 단장(이하 “평가단장”이라 한다)은 속초시 재난산림 관리과장으로 한다.

③ 위험도 평가단은 평가단장을 제외하고 4명 이상으로 한다.

④ 위험도 평가단에는 지진피해 구역별 또는 시설물별로 평가반을 둘 수 있다.

⑤ 속초시 지역본부장은 위험도 평가의 실시에 대비하여 다음 각 호의 전문가를 위험도 평가단원으로 등록 및 관리하여야 한다.

1.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건축, 토목, 안전관리(건설안전) 직무분야 초급기술자 이상

2.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및 건축사보

3. 속초시 지역본부장이 자격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는 사람

⑥ 위험도 평가단원의 등록·말소 신청서 및 평가단원증은 각각 별지 제1호 서식 및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다.

⑦ 속초시 지역본부장은 위험도 평가단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위험도 평가에 관한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강원도 본부장이 속초시 위험도 평가단원을 대상으로 세미나 또는 워크숍을 개최한 경우 속초시 본부장이 교육·훈련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제6조(위험도 평가 시기) ① 속초시 본부장은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위험도 평가가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험도 평가 실시 시기 및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② 평가단장은 피해규모 및 현지여건을 감안하여 위험도 평가 기간을 속초시 본부장의 승인을 얻어 연장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7조(위험도 평가 및 현장조치 등) ① 지진피해 시설물의 위험도 평가와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전에 파악하여야 한다.

1. 위험도평가 대상지역
2. 시설물 피해상황
3. 화재 발생 상황
4. 치안 유지 및 폭동 발생 여부
5. 그 밖에 위험도 평가시 필요한 사항 등

② 지진피해 시설물의 중요도에 따라 위험도 평가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 및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제3조제 1항에 따른 다중이용시설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위험도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위험도 평가를 실시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평가결과를 3등급으로 구분하고, 다음 각 호의 표지를 피해 시설물의 잘 보이는 위치에 부착하거나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3호서식의 위험 표지
2. 별지 제4호서식의 사용제한 표지
3. 별지 제5호서식의 사용가능 표지

④ 위험도 평가의 결과가 위험 또는 사용제한 등급인 경우 피해 시설물의 잘 보이는 위치에 별지 제6호서식을 부착하거나 표지 부착이 곤란한 시설물에는 출입 차단시설 또는 안전선 등을 설치하고 시설물의 사용과 출입을 통제할 수 있다.

제8조(위험도 평가 결과 보고서 제출 등) ① 평가단장은 현장조사를 통한 위험도 평가를 완료한 후 15일 이내에 위험도 평가결과 보고서를 속초시 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평가단장은 3개월 이내에 최종보고서를 작성하고, 위험도 평가 활동과 관련된 보고서, 사진 등 결과물 일체를 강원도 본부장을 경유하여 중앙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평가반장은 피해 시설물의 후속 조치 또는 정밀 분석·조치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후속 조치에 대한 상세계획 등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④ 속초시 본부장은 위험도 평가단 최종 보고서와 피해 시설물 후속 조치계획 등을 검토하여 보고서를 발간하여야 한다.

제9조(타 지자체 지원 및 지원요청 등) ① 속초시 본부장은 신속한 위험도 평가의 실시를 위하여 강원도 또는 인근 시·군 지역본부장에게 필요한 기차재 및 인원 등을 지원 요청할 수 있다.

② 속초시 본부장은 강원도 및 시·군·구 지역본부장으로부터 위험도 평가와 관련된 지원요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원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지원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지원을 요청한 속초시 본부장의 지휘에 따라 위험도 평가 관련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10조(위험도 평가단원의 안전 및 피해 보상) ① 속초시 본부장은 위험도 평가 시 위험도 평가단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② 위험도 평가 활동으로 평가단원이 사망 또는 부상 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보험에 가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1조(경비지원) 위험도 평가의 원활한 실시를 위하여 위험도 평가단원에게 평가활동 등에 필요한 수당과 여비, 차량 임차비, 보고서 작성비 등 제반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 위험도 평가단의 구성·운영, 위험도 평가 세부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속초시 본부장이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위험도 평가단원 등록(말소) 신청서

회원번호		신 청 일	
------	--	-------	--

성 명		주민번호	
소 속		직 급	

주소 : (-)	전화 : ()
	FAX : ()

E-mail :

전문분야 :

☐ 건축물
☐ 철도
☐ 가스·전력·통신

☐ 교량·터널
☐ 원자력시설
☐ 기타()

☐ 댐·저수지
☐ 항만

본인은 지진재해대책법 제21조에 의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원 (등록, 말소)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속초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장 귀하

210mm×297mm

< 앞 >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원증**

성 명 :

소 속 :

주 소 :

사 진

위 사람은 지진재해대책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원임을 증명함.

속초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장 (인)

120mm×90mm

< 뒤 >

본 단원증을 분실, 습득하신 분께서는 속초시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Tel : 033-639-2760)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속초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장

120mm×90mm

[별지 제3호서식]

긴급 위험도평가 결과 <빨강>

위험!

본 시설물은 거주 및 출입을 금함.

☐ 평가자 :
☐ 평가일시 :

이 표지를 떼지 마시오.

지진재해대책법 제21조 규정에 의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평가단의 긴급평가 결과입니다.

속초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장
[Tel : 033-639-2760]

210mm×297mm

[별지 제4호 서식]

긴급 위험도평가 결과 <노랑>

사용제한

본 시설물의 거주 및 출입에 주의바람.

☐ 평가자 :
☐ 평가일시 :

이 표지를 떼지 마시오!

지진재해대책법 제21조 규정에 의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평가단의 긴급평가 결과입니다.

속초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장
[Tel : 033-639-2760]

210mm×297mm

[별지 제5호 서식]

긴급 위험도평가 결과 <초록>

사용가능

본 시설물은 거주 및 출입이 가능함.

☐ 평 가 자 :
☐ 평가일시 :

이 표지를 떼지 마시오.

지진재해대책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평가단의 긴급평가 결과입니다.

속초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장
[Tel : 033-639-2760]

210mm×297mm

[별지 제6호 서식]

이 표지를 떼지 마시오. <분홍>

출입통제

지진재해대책법 제21조 규정에 의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평가단의
긴급평가 결과,
**본 시설물은 붕괴우려가 있어 출입을
통제합니다.**

속초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장
[Tel : 033-639-2760]

210mm×297mm

속초시 주민등록업무 및 인감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속초시 주민등록업무 및 인감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속초시 법무행정사무처리규칙」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9월 25일

속 초 시 장

1. 자치법규명 : 속초시 주민등록업무 및 인감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조례
2.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
 - 「본인서명사실확인 등에 관한 법률」이 2012년 12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업무가 발생되어 본 업무를 처리하는 공무원과
 - 여권발급 및 가족관계등록, 지적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항시 사고에 노출되어 있어 사고로 인한 피해발생시 구제할 수 있도록 보험 및 공제가입 대상범위를 확대하여 담당공무원들이 안정된 여건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가. 보험·공제 등 적용대상 범위를 기존 주민등록·인감업무에서 본인서명사실확인·여권발급·가족관계등록, 지적업무로 확대함(안 제3조).
 - 나. 민원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직위 포괄계약 방식에 따라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보험가입금액은 각 업무별로 최저 1억원 이상으로 함(제4조).
4. 자치법규안 : 붙임

5. 의견제출

가.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2년 10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속초시장(참조 : 민원행정담당)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명) 주소 · 전화번호
- 3) 기타 참고사항 등

다. 의견제출할 곳 : 우217-030/ 속초시 중앙로 183(중앙동 469-6)

속초시청 민원봉사과 민원행정담당(전화: 033-639-2720, FAX: 033-639-2385

E-mail: sunnam68@korea.kr)

라. 의견제출 방법: 서면, 전화, FAX, 시 홈페이지, 직접방문 등

6. 기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속초시청 민원봉사과 민원행정담당 정순남(전화 : 033-639-2720)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속초시 주민등록업무 및 인감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속초시 주민등록업무 및 인감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속초시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속초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공제 등 가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의 범위는 제3조의 민원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하 “민원담당공무원”이라 한다)과 그 대직자로 한다.

제3조(보험가입 대상) 보험 또는 공제(이하 “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하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감 관련업무
2. 본인서명사실확인 관련업무
3. 주민등록 관련업무
4. 여권발급 관련업무
5. 가족관계등록 관련업무
6. 지적(임야)도, 토지(임야)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원 관련업무
7. 그밖에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제증명 관련업무

제4조(보험의 가입) 시장은 민원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직위 포괄계약 방식에 따라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보험가입금액은 각 업무별로 최저 1억원 이상으로 한다.

제5조(보험료의 지급) 시장은 민원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해당연도 세출예산에서 지급하여야 한다.

제6조(보험의 청구 및 변상) ① 시장은 민원담당공무원이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그 밖에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 없이 가입 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해당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변상책임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초과액을 해당 민원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할 수 있다.

제7조(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 ① 시장은 민원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보험 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보험가입상황을 기록하여야 하며, 보험증권 및 관계서류를 보관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가입된 보험은 이 조례에 따라 가입한 것으로 본다.

[별지 제1호 서식]

보험가입 관리대장

[illegible]